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3호, 2025. 8. 7., 일부개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총괄) 044-201-6783, 6779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등록·신고·면제, 유해성 심사, 제한·금지물질) 044-201-6846, 6789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용도,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201-6784, 67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2018. 12. 28.>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7. 29., 2024. 4. 9., 2025. 8. 7.>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2024. 10. 10.>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 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 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 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 3의2.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 3의3. 영 제13조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 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5. 8. 7.>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8. 7.>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 [본조신설 2018. 12. 28.]

-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5. 8. 7.>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4. 4. 9.>
 - ④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4. 10. 10.>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

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9.>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삭제 <2018. 12. 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전문개정 2018. 1. 15.]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본조신설 2018. 12. 28.]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 <2018. 1. 15.>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1. 시험조건 또는 방법
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

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8. 12. 28.>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다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 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2024. 4. 9.>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2. 28.>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10. 14.,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6. 8. 4.>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이후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가 예상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2. 그 밖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 시험자료 외의 자료
-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 ④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및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만 해당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
 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29.]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④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1.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유해성저감대책 등 유해성에 관한 정보
8.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신설 2025. 8. 7.>

1.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1.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⑤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2021. 10. 14., 2025. 8. 7.>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신설 2020. 12. 17.>
 [본조신설 2018. 12. 28.]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개정 2021. 10. 14., 2023. 12. 1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8. 7.>

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5. 8.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5. 8. 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9., 2025. 8. 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12. 28.>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8.>
- [제목개정 2023. 12. 18.]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43조 삭제 <2018. 12. 28.>

제44조 삭제 <2018. 12. 28.>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47조 삭제 <2018. 12. 28.>

제48조 삭제 <2018. 12. 28.>

제6장 보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24. 4. 9., 2025. 8. 7.>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4. 4. 9., 2025. 8. 7.>
- ⑤ 삭제<2018. 12. 28.>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 마.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정보
 -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2) 물리적·화학적 특성
 - 3) 유해성
 -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7.]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 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 12. 28.>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7.,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21. 10. 14., 2025. 8. 7.>

1. 국립환경과학원
-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6.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1. 삭제 <2018. 12. 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 <2018. 12. 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본조신설 2018. 12. 28.]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8. 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1. 10. 14.]

부칙 <제1183호, 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7.>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위 표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3)·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1. 위 표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위 표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1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위 표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분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 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또는 확장1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 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나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고분자화학물질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1)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1) 제1호2)가)·나)의 시험자료 2) 제1호3)가) 또는 다)의 시험자료 3) 제1호3)나)의 시험자료 4)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2) 1) 외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6.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 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1)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2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제1호2)·3)에 따른 시험자료 및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7. 나노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입자크기

나. 입자크기분포

다. 입자모양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등을 고려한 시험면제 조건을 말한다)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8. 7.>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나.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 다.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 라.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제1호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인 화학물질
 - 나.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 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9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작성방법에서 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확인한 자료(시험자료·비시험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자료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제8호에 따른 최종 노출시나리오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해성관리대책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가.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의 유해성이 유사하거나 규칙적인 경향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나 물질 카테고리 간주되어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험계획서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바. 위해성 자료에는 다음의 평가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5)까지를 평가한 결과 화학물질이 별표 7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 및 7)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2)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 3)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4)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5) 잔류성·축적성 평가
- 6) 노출평가(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노출예측)

7) 안전성 확인

사. 바목 6)의 노출평가는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세부 조건인 노출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3. 바목 1)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중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용도에서 발생하는 용량(농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바목 2)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환경에서의 분해, 농축 등 거동 특성을 평가한다.

나. 분해성을 고려한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바목 3)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 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와 관련된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수생(침전물 포함)생물, 2) 육생생물, 3)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화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바목 4)에 따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농도)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급성영향(급성독성, 자극성 및 부식성), 2) 과민성, 3) 반복투여독성, 4) 발암성·변이원성(유전독성)·생식독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바목 5)에 따른 잔류성·축적성 평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8. 바목 6)에 따른 노출 평가

가. 노출 평가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매체에 미치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아래의 2단계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2) 노출예측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먼저,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관리수단에 대한 초기 가정한 초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따라 작성한다.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라.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1) 배출예측, 2)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에 대한 평가, 3) 노출수준 예측의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하여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소비자, 작업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체 노출과 관련된 모든 경로(흡입, 입, 피부 및 이들의 조합)를 포함한다.

9. 바목 7)에 따른 안전성확인

가. 제8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유해성관리대책에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모든 배출원에서 화학물질이 모든 환경 영역으로 유출·배출 및 손실되는 총 결과를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검토해야 한다.

10. 유해성 자료는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각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2.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제조 및 확인된 용도
4. 분류 및 표시
5.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가. 폭발성
 - 나. 인화성
 - 다. 산화성
6.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7.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가. 수생 환경영역(침전물 포함)
 - 나. 육생 환경영역
 - 다.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
8.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가. 급성독성
 - 나. 자극성·부식성
 - 다. 과민성
 - 라. 반복투여독성
 - 마. 변이원성
 - 바. 발암성
 - 사. 생식독성
 - 아. 다른 영향
 - 자.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도출
9. 잔류성·축적성 평가
10. 노출평가
 -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11. 안전성 확인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전체적인 노출(관련된 모든 배출/유출원의 조합)]

- 환경
- 인체 건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조건

-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 1) 적절한 소화제
-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 시 방제요령

가. 예방조치

- 1)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 2)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될 것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할 것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영 제13조제8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시험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	1) 추가 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28일) 3) 반복투여독성(90일) 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옥탄올/물 분배계수	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성 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부식성 4) 눈 자극성/부식성 5) 피부 과민성 6) 복귀돌연변이	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급성독성 3) 담수조류 생장저해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8) 육생식물 만성독성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9) 추가 유전독성	10)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10) 반복투여독성(28일)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1) 반복투여독성(90일)	12) 이분해성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3) 본질적분해성
13) 최기형성	14) 생물농축성
14) 2세대 생식독성	
15) 발암성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말한다.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 1)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다만, 등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물질의 상태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가) 어류급성독성
나) 물용해도	나) 복귀돌연변이	나) 이분해성
다) 녹는점/어는점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라) 끓는점	라) 피부 과민성	라) 담수조류 성장저해
마) 증기압	마)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마) pH에 따른 가수분해
바) 옥탄올/물분배계수	바) 눈자극성/부식성	바) 본질적분해성
사) 밀도	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사) 분해산물의 확인
아) 입도분석	아)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	아) 어류만성독성
자) 인화성		자) 물벼룩만성독성
차) 폭발성		차) 육생식물 급성독성
카) 산화성		카)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타) 점도		타)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파) 해리상수		파) 흡착 및 탈착
		하)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세포 유전독성 자) 반복투여독성(28일) 차)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카)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타) 반복투여 독성(90일) 파) 최기형성 하) 2세대 생식독성 거) 발암성	추가 정보 거) 육생식물 만성독성 너)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더)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러) 저서생물 만성독성 머) 생물농축성
--	--	---

2) 그 밖의 경우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	---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 2) 공정도(임의 제출)
 -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라)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마)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
다)의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
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교: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
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
한다.
-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
명, 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누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
명

사. 영 제11조제1항제9호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2)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10.30.>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무게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7.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8.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

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 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용도의 범주: 주요 용도의 확인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나. 소비자 용도

2. 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1) 가)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나)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써의 사용, 다) 비분산적 사용, 라)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마) 그 밖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설의 형태를 가) 저장보관시설, 나) 이송운반시설, 다) 사용시설, 라) 환경오염방지시설, 마)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나.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작성

3. 주요 노출경로(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인체 노출: 1) 입, 2) 피부, 3) 흡입, 4)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나. 환경 노출: 1) 수계, 2) 대기, 3) 폐기물, 4) 토양, 5)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4. 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돌발적·간헐적, 나. 가끔씩, 다. 지속적·빈번한, 라.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5. 제조·사용량 및 제조·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가. 일일 평균 제조·사용량을 작성

나. 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를 작성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신뢰성
 - 마. 영 제3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신뢰성
 - 다. 나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지 여부
 - 라.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추가 자료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와 동일한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 나.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20,000원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8. 12. 28.>

☐ 제조

☐ 수입

☐ 신규

☐ 기존

☐ 개별제출

☐ 공동제출

화학물질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 상품명			③ 확인된 불순물·부 산물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등록의 형태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나노물질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변경등록사항	⑥ 등록번호								
	톤수 범위								
	용도								
	유해성·위해성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 대표자	⑩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 수입국			
⑫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용도	⑬ 용도분류체계								
	⑭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⑮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⑯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⑰ 상품 내 함량(%)								

⑮ 분류 · 표시	분류				
	표시사항				
물리적·화학적 특성	항목	⑲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항목	⑱자료개요	⑳시험방법	㉑시험결과	㉒자료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 첨부 • 여부
인 체 유 해 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항목	㉑자료개요	㉒시험방법	㉓시험결과	㉔자료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 첨부 • 여부
환경유해성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항목	⑱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고 분 자 자 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나 노 물 질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공 동 제 출	대 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성 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㉒등록의 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신규 ☐ 등록 ☐ 수입 ☐ 기존 ☐ 개별제출 ☐ 화학물질의 ☐ 변경등록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6쪽 참조	수수료 제6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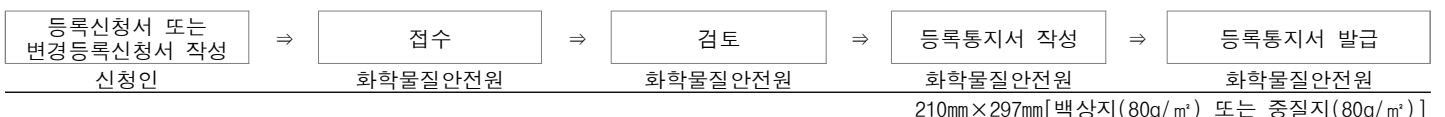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등록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계획서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 신청서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순도(%) 및 ⑦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②란의 상품명, ⑥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⑦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⑥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란~⑪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⑫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⑬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⑭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 ⑮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⑯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 ⑰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 ⑱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 ⑲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 ⑳란의 자료첨부 여부에는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시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이 생략되어 시험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㉑란~㉒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㉓란의 등록의 형태에는 ⑤란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제조·수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인수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제조·수입일	제조·수입량 및 이송량(톤)	분리·이송사유 (용도)	포장형태 (수량)	이송일	이송책임자 성명(연락처)

(앞쪽)

등록번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구분	[] 제조·수입자 []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 위탁한 자	
화학물질의 구분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			
등록의 형태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나노물질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변경사항>

[illegible]

<처분사항>

[illegible]

<참고사항>

[illegible]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 식별정보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지침				
노출정보				
기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기존 화학물질

☐ 제조

☐ 신고서

☐ 수입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연간 제조(수입)(예정)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나노물질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②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③분류체계 ④범주 및 구체적 용도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소비자 용도 ()			
⑤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⑩수입 국
⑪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의2제2항

☐ 제6조의2제4항

에 따라

☐ 제조

☐ 수입

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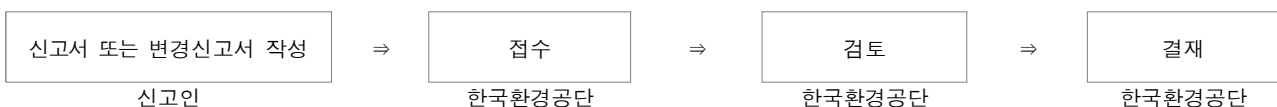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 ③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⑤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⑥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⑪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규 화학물질

[] 제조

[] 신고서

[] 수입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 제 조 (수입)예정량(kg)				
	⑤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산업적/전문적 용도() [] 소비자 용도()		
	유해성 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해당 ※ 미확인 항목: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이분해성 [] 해당없음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⑧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 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의3제1항
 [] 제12조제3항 []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 제 조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신고
 []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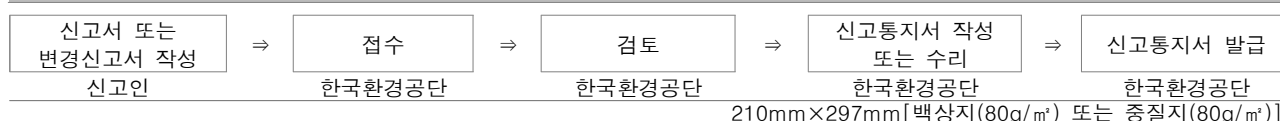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⑥란의 변경신고 사항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⑨란~⑬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기타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변경사항>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 통지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 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자료를 수정·보완
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제 조 ☐ 등 록 ☐ 면제확인 ☐ 신청서
☐ 수 입 ☐ 신 고 ☐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 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변경신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⑬수탁자 (신청인이 위탁 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제1항
☐ 제11조제3항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화학물질의 ☐ 등록 면제 확인을 ☐ 신청
☐ 수입 ☐ 신고 ☐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다.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등록면제 확인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신고면제 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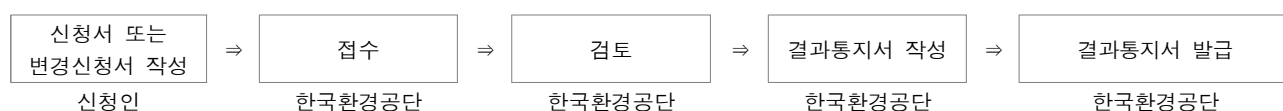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수입량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 ⑧란 ~ ⑩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⑬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0.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면제확인번호		☐ 제 조 ☐ 등 록 면제확인 ☐ 수 입 화학물질 ☐ 신 고 신청결과통지서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연간 제조(수입)량(톤)			금회 제조(수입)량 (톤)	
수입(수출)국				
면제확인 신청결과		대상 ☐ 비대상 ☐ 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제조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사항	①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②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①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통지서에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1. 15.>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상품명				
	② 용도						
개별제출 사유	[] 영업비밀 공개로 상업적 손실 발생 [] 개별제출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이견 [] 시험자로 선택에 대한 이견 [] 보유한 등록신청자료를 다른 제조·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③ 구체적 사유 기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	④ 상호(명칭)	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대표자	⑦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⑧ 수입량 (톤)	⑨ 수입국	
⑩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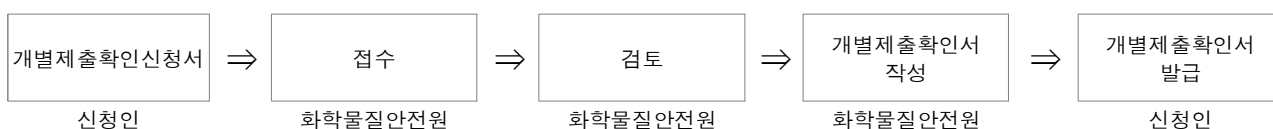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자료제공 동의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 ④란 ~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입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⑧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⑩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료제공 동의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아래의 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할 자료의 목록	
동의서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용도				
개별제출 사유				
확인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 개별제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 번호)								
	③분자식·구조식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형태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나노물질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 학물질([]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⑪상호(명칭)	⑫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대표자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수입국		
⑯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문의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화학물질안전원	⇒	검토 화학물질안전원	⇒	결재 화학물질안전원	⇒	확인통지서 발급 화학물질안전원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확인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			
	등록 여부	[] 등록(등록통지일 :) [] 미등록		
등록형태	[] 0.1톤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나노물질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 질] ([]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등록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가 문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제 조
[] 수 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화학물질의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	②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해당 시험항목명						
⑧사용동의 거부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 수입량(톤)	⑭ 수입국
⑮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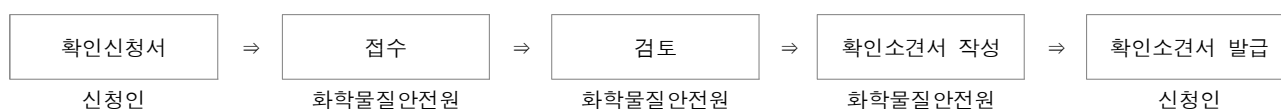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은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 ⑨란부터 ⑭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⑮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제 조 [] 수 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화학물질의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해당 시험자료				
확인결과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귀하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결과	년 월 일까지(일)
	연장 허용/ 불허용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을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 할 납 부 신 청 금 액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과기간	납부고지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분할납부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용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해당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 [] 해당 없음 [] 기타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전화번호:)			
시행일자:			
받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화학물질안전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화 학 물 질 유 해 성 심 사 결 과 통 보 서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심 사 결 과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해당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 [] 해당 없음 [] 기타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호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등록(변경등록)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
<개정 2019. 12. 20.> 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②시험자료 명칭			
	③시험자료 사용용도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개별 사업자 [] 협의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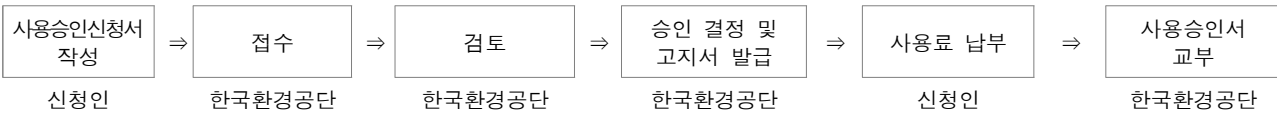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	----	--

작성방법

-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 1. 상호(명칭) :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3. 성명(대표자) :
- 4. 소재지(사업장) :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 6.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 칭	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성명(운영책임자)			
	소재지(사업장)			

신청범위	분 야	① 세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	
	[] 인체유해성(건강영향) 시험	
	[] 환경유해성(생태영향) 시험	
	[] 환경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시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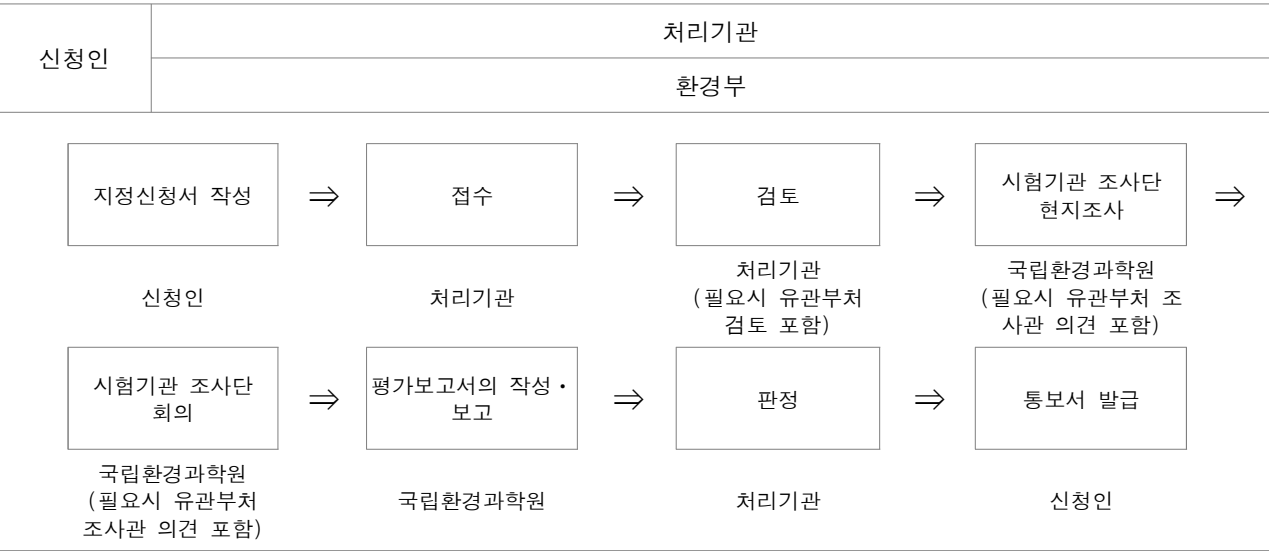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시설 현황 내역서 5부 2. 운영 현황 내역서 5부 3. 시험능력(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증명하는 자료 각 5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유해성 시험방법의 분야별 시험항목 중 지정받으려는 세부시험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쪽)

지정번호 (Certification No.)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GLP Certificate	
제 호			
①	시험기관		
	Test Facility Name		
②	소 재 지		
	Address		
③	대 표 자		
	President		
④	운영책임자		
	Test Facility Management		
⑤	시험의 범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끝.	
	Test Scope	(Validation: sinc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GLP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test facility was inspected by the national compliance monitoring authority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Issue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환 경 부 장 관 Minister, Ministry of Environment 직인			

<변경사항>

[illegible]

<처분사항>

[illegible]

<참고사항>

[illegible]

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현지평가 필요시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및 운영책임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 신청 범 위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변경 사 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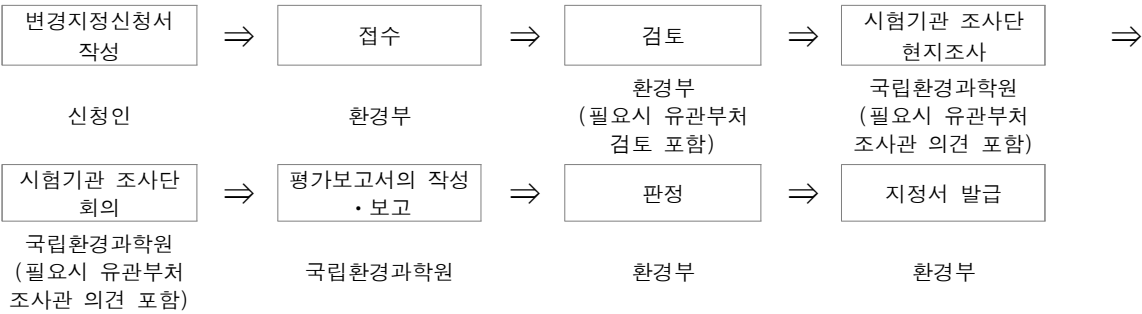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과 ②란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의 전과 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자	기관명	운영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분야	
	인력현황	
		시험책임자 ()명, 신뢰성보증 ()명, 시험담당자 ()명, 기타 ()

시험 번호	시험 항목	시험물질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시험 의뢰자	시험 책임자	시험 계약일	시험개시 (예정)일	시험종료 (예정)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영책임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작성 방법

- 1. 인력현황에는 직무별 인원을 기재합니다.
- 2. 시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상품명, 제품명, 제품코드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책임자는 해당 시험의 시험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제 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등록 (변경 등록) 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4쪽 중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 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등록·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물질 구분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해당 ※ 미확인 항목: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 ☐ 이분해성 ☐ 해당없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분류 표시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질 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분자량			
	등록·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상품명			
	용도(상세기술)					
2. 물리적·화학적 특성	물질의 상태		물 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인화점		밀도			
	입도		점도			
	나노물질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입자크기	입자모양	종횡비 (縱橫比, aspect ratio)	
3. 분류 표시 정보	구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4. 유해성 정보	물리적 위험성	항목	독성정보			

4. 유해성 정보	인체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발암성	
		기타	
	환경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수생 생물 독성	
		육생 생물 독성	
		이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생물농축성	
		환경 거동 및 동태	
		기타	
	5. 노출 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6. 취급 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취급자에 대한 응급 조치방법		
7. 화재시 대처 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8. 누출시 방제 요령	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 요령		

9. 폐기 방법			
10. 물질 구분에 따른 규제 정보	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11. 위해성 정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적습니다.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13. 참고 자료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 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등록번호·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물질 구분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해당 ※ 미확인 항목: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이분해성 ☐ 해당없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하위사용자·판매자

[] 제조자·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함량 및 함량범위(%)	
	상품 취급수량(톤)	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사용(가능)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화학물질 노출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기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개정 2025. 8. 7.>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 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①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④제품 의 용도	⑤제품 내 중 점관리물질 의 용도(기능)	⑥제품 내 중점 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⑦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	⑧제품별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 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톤)	⑭수입국
⑮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
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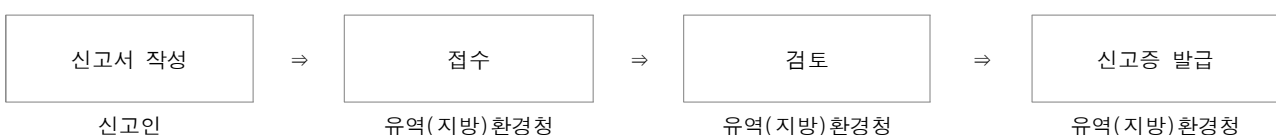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①란은 ⑧란의 제품 전체를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물질의 분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EU CLP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③란 ~ ⑥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서 제시한 용도(예: 세정제, 코팅제, 페인트 등)를 적습니다.
- ⑤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 ⑥란은 입, 피부,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 ⑦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을 각각 적습니다.
- ⑧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 ⑨란 ~ ⑭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⑮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변경사항>

[illegible]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
<개정 2025. 8. 7.>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신고번호		중점관리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	②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③제품의 용도	④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⑥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⑦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노출정보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 용도							
[] 함유량							
[]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	⑧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변경 전			변경 후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 (톤)	⑭수입국	
[] 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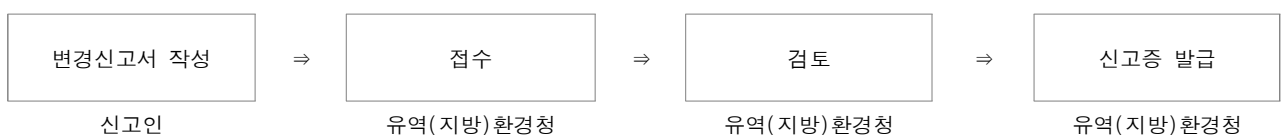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000원 (중기업은 7,500원, 소기업은 3,000원)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부터 ⑭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8. 12. 28.>

[] 제품 양수자

[] 일반 소비자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품 정 보	제 품 명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 학물질 식별번호)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용가능용도	
	사용제한용도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사 용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올바른 사용조건	
	저장 및 보관방법	
	폐기방법	
	노출시 대처방법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 선임서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같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선임 하였음
[] 해임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선임서 또는 해임서 작성·제출 신고인	⇒	접수 한국환경공단	⇒	검토 한국환경공단	⇒	신고증 통지 한국환경공단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선임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
7. 제품명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조직·인력·시설·장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2년간 녹색화학분야 연구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지정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센 터 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대상	정보 구분	[] 유해성 정보 [] 기타 정보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등)	
요청사항		
요청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안전원장·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이용목적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
보유·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정·보완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협의 (필요 시)	⇒	검토 및 협의 결과 통지

[] 보호
자료 [] 보호기간 연장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요청인 (법 제38조 에 따라 선임 된 자 포함)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사항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 요지 및 이유			
	보호대상 자료 목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료 [] 보호
[] 보호기간 연장 를(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환경)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위 요청사항란 중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 요지 및 이유 칸을 작성할 때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자료보호 수리결
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연장)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관리번호		자료 ☐ 보호 ☐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제 호					
요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수 리 결 과	화학물질명 (총칭명)				
	자료보호항목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자료 비보호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기 관 의 장 직인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 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				
관리번호				

신청 사 항	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 목록	
	해지 전	해지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관리번호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검토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통지 신청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관리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해지 결과	화학물질명(총칭명)	
	보호되는 자료항목	
	보호해지 되는 자료항목	자료보호 해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화학물질

☐ 등록

☐ 면제확인

☐ 중점관리물질

☐ 신고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 사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신고번호				
신고사항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 화학물질 ☐ 등록 ☐ 면제확인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 중점관리물질 ☐ 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2,000원 (중기업은 1,000원, 소기업은 400원)
담당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검토	⇒
		한국환경공단	
		결재	
		한국환경공단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① 최근 3년간 제조 (수입)량(톤)		
	②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성심사를 받았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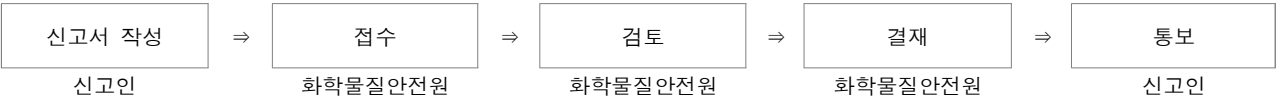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 소재지(사업장) :
-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 별번호)		
등록번호		
등록형태	☐ 0.1톤 미만 ☐ 0.1톤 이상 ~ 1톤 미만 ☐ 1톤 이상 ~ 10톤 미만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출사항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등록번호				
	② 등록 신청한 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③ 실제 연간 제조(수입)량(kg)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의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은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량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에 적은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kg)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실제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제출인	⇒	접수 화학물질안전원	⇒	검토 화학물질안전원	⇒	결재 화학물질안전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